

「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6조(수업연한의 단축) 개정에 따라 학·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 및 단축 범위를 명시하고 대학원 학위기 서식을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이관하기 위해 대학원 학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학·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및 단축 범위 명시 (안 제20조 개정)

-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학·석사연계과정 이수 학생의 수업연한 및 단축 기준을 명확히 함

□ 학위기 서식 이관(안 제40조, 제42조, 제52조 개정)

- 대학원 학칙에 포함되어 있던 대학원 학위기 서식을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이관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함

3.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
제20조 (수업연한) ① <u>일반대학원의</u> 수업연한은 <u>석사학위과정 2년(4개 학기), 학·석사연계과정 1.5년(3개 학기), 박사학위과정 2년(4개 학기)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(8개 학기)</u>으로 하며, <u>항공·경영대학원 및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6개월(5개 학기)</u>로 한다. <개정 2024.1.29.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<u>학칙이 정하는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</u>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24., 2024.1.29., 2025.10.27.> 1. 석사과정 :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와 특수대학원은 최대 6개월 이내(1개 학기),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정원의 전담학과 이중언어과정은 최대 1년 이내(2학기) 2. 일반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 : 최대 1년(2개 학기) <신설> ③ (생략)	제20조 (수업연한) ① <u>대학원의</u> 수업연한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</u> <개정 2024.1.29.,2026.xx.xx> 1.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: 각 2년(4개 학기) 2. 석·박사통합과정 : 4년(8개 학기) 3.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: 2년 6개월(5개 학기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<u>학위취득에 필요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</u>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24., 2024.1.29., 2025.10.27., 2026.xx.xx> 1. 석사<u>학위</u>과정 :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또는 <u>협동과정</u>, 특수대학원은 <u>최대 6개월(1개 학기)</u>,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정원의 전담학과 이중언어과정은 <u>최대 1년(2개 학기)</u> 2. 일반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 : 최대 1년(2개 학기) 3. 학·석사 연계과정 : 대학원 수업연한 <u>최대 6개월 (1개 학기)</u> ③ (현행과 동일)
제40조 (학위기)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1>, 박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2>, <u>항공·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3>,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수여는 <별지서식7>에 의한 학위기로서 시행한다.</u> <개정 2008.9.1., 2024.1.29>	제40조 (학위기) <삭 제 2026.xx.xx>

현행	개정(안)
제42조 (학위종별) ① (생략) ② 명예박사학위는 <별지서식4>에 의한 학위기로 시행한다.	제42조 (학위종별) ① (현행과 동일) ② <삭 제 2026.xx.xx>
제52조(연구과정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연구과정학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<별지서식 5>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	제52조(연구과정) 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③ 연구과정학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<개정 2026.xx.xx.>
	부 칙 ①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xx월 xx일부터 시행한다.